

신용카드 회원 약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주)전북은행이하 “은행” 이라 함과 신용카드이하 “카드” 라 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회원)

- ①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 ② 본인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은행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은행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 ③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기타 카드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은행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제2장 카드의 발급 및 관리 등

제3조 (카드의 발급)

- ① 카드를 발급받으자 하는 신청인이 은행에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관련 절차 등을 거쳐 발급합니다.
- ② 카드모집자가 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자금의 용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 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 ③ 은행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청인에게 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카드의 거래조건 및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등을 알려야 합니다.

제4조 (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 ① 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 ② 은행은 회원이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카드의 잔여 유효기한까지는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 ③ 은행은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④ 갱신발급 ·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은행이 갱신발급 · 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 · 거절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거나, 갱신이 거절됩니다.
- ⑤ 갱신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관련법에 의거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발급합니다.
- ⑥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5조 (카드의 관리)

-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② 카드의 소유권은 은행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 · 대체 · 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은행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6조 (연회비 청구)

- ① 연회비는 은행이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됩니다.
- ② 은행은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 ③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와 갱신발급은 은행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은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에게 연회비 청구기준 및 청구금액 등을 안내합니다.
- ⑤ 은행은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6조의2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 ①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제7조의4에 따라 휴면카드를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은행과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② 은행은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 방식을 함께 해당 은행과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④ 은행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하면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7조 (카드이용 정지)

- ① 은행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이용 정지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또는 전화로 이용 정지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은행이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당일 고지).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5.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은행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6.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② 은행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은행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 사용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은행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 사용이 정지된 이후 해외에서 은행의 승인 없이 전표가 매입되는 거래(이하 "해외 무승인매입" 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④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⑤ 은행은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당일에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등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여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7조의2 (카드의 한도감액)

은행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이용한도를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또는 전화로 한도감액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은행이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도감액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당일 고지).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5.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구속 등으로 회원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의3 (카드의 해지)

- ① 은행은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은행은 별도의 안내없이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파산, 개인회생 신청 등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3. 이민,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② 회원은 은행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의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은행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사용이 해지된 이후 해외 무승인매입이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

원에게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반납하고, 은행은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4 (휴면카드 해지)

- 은행은 회원의 카드가 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이하 '휴면카드' 라 함)로 된 경우,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가족카드 중 본인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이나 가족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가 아닌 경우 본인회원의 카드
 -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능(하이패스카드), 현금인출 기능 등 카드에 부가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휴면카드
-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등으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은행은 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
- 은행은 제1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은행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 제3항에 따른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다시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용정지가 시작된 후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 은행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연회비를 반환합니다.

제3장 카드의 이용

제8조 (카드의 이용 등)

-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은행 또는 은행과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 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은행과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 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은행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용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은행은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사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카드의 해외이용 등)

-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익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은행의 규약에 따르며, 은행은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익을 신청할 경우 동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회원은 국내 및 해외사용 겸용으로 발급된 카드의 경우 해외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IC 칩 비밀번호(이하 "PIN번호" 라 함)가 등록되지 않은 카드 및 일부 해외가맹점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카드의 이용한도)

- 카드 이용한도는 신규가입을 할 경우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은행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회원에게 별도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은행은 카드의 유효기한 이내 및 유효기한 경과 후 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은행은 이용한도 증액 시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됩니다.(회원이 사전에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은행에 신청한 경우는 제외). 다만,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등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 후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에 따라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은행은 이용한도를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전화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1조 (할부구입)

- 회원은 은행으로부터 할부판매를 지정받은 국내가맹점에서 은행이 정한 할부가능금액에 대하여 할부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 할부기간은 은행이 통보한 최장기간 이내에서 회원이 지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계약에 한하여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가맹점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수수료를 가산한 할부금을 할부기간동안 결제하여야 합니다.
- 최초 할부금에는 분할잔여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⑤ 은행은 연간 할부수수료율 및 100원당 부담하는 할부개월별 수수료를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⑥ 은행은 은행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회원의 신용등급 하락, 금융회사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도 변동,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할부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할부철회권)

- ① 회원은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날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2. 설치가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3.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4.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당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5.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6.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 ② 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철회의 의사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13조 (할부항변권)

- ① 회원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댓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20만원 미만의 거래, 회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제외됩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2.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② 회원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은행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 ③ 은행은 서면으로 접수된 소비자의 항변권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나머지 할부금 지급 거절의 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은행은 소비자가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항변권 관련 분쟁이 해결될 때(소송중이거나 항변권 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까지 해당 소비자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⑤ 회원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해당가맹점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4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① 회원은 은행이 부여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내에서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거래를 이용할 경우에 회원이 은행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청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 한하여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거나 은행에서 따로 정한 기일 내에 회원의 카드결제계좌 (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명의로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 ③ 은행은 제11조제6항과 같은 사유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이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는 경우 회원은 제3항의 수수료 외에 은행 또는 은행 제휴기관 등이 정하는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5조 (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 ① 은행은 은행이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회원이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은행은 회원이 탈퇴(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적이 상실된 상태)나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퇴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의 개인정보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퇴나 개인정보삭제 요청인 경우, 해당 은행은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를 발급할 경우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1.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2.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한,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3.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 ③ 제2항의 경우 은행은 회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④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은행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 은행이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다만,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
- ⑤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모집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 제4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 ⑥ 은행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은행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제4항 제1호,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 제4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 ⑦ 은행은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
- ⑧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결제대금을 미리 은행에 지급한 경우에도 은행은 포인트를 적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은행은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일수만큼 포인트를 차감한 후에 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제16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외에 은행이 본인회원에게 제공하는 자금용도로써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이자율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7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회원이 카드 회원 가입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를 한 후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서면, 관련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유무선 통신에 의한 방법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내용 답변 녹음 등 증거자료 확보·유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8조 (이용계약의 성립)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계약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회원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은행은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의 주요 내용과 신용변동 가능성을 대출 실행 이전에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계약 성립 이후 은행은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상품설명서 또는 대출계약서를 전자우편(E-MAIL), 서면, 이용대금명세서 등 회원과 협의한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19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 및 상환방식의 결정)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의 본·지점 또는 은행과 제휴 또는 위임한 기관의 본·지점 방문 : 신분증 제출
 -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고객센터상담원 : 회원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회원 개인정보명세서 수령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을 통한 본인확인
 - 인터넷, 모바일 : ID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 자동화기기 : 회원의 카드를 실물 투입하거나 리더기를 통과하고 회원의 비밀번호 입력(이 경우 회원은 기기 이용수수료를 부담)
-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은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대출사기 피해방지를 위하여 유선을 통한 본인신청 여부 확인 또는 사기방지 휴대문 문자메세지 서비스 인증번호 입력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합니다.
- 회원은 은행이 대출금액을 지급한 이후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취소사유 이외의 사유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약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

- 은행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회원에 대하여 가처분 소득,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기간,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은행의 내부기준에 따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부여합니다.
- 은행은 제1항에 따른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부여하는 경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월 채무원리금 상환액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신청일 이전 회원의 3개월 평균 카드 이용가능 한도 미사용금액 이내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합니다.
- 회원은 은행이 산정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대출금 상환)

-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이 선택하여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 후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마이너스방식 등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 ②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월 균등한 원금과 대출 잔액에 따른 이자를 회원이 은행과 약정한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③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균등한 금액을 회원이 은행과 약정한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④ 거치후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일정기간(거치기간)에 이지만 납입하다가 이후 매월 균등한 원금과 대출 잔액에 따른 이자를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⑤ 거치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일정기간(거치기간)에 이지만 납입하다가 이후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균등한 금액을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⑥ 만기일상환방식은 원금은 대출 기간이 끝나는 날에 전액상환하며, 매월 결제일에 이자금액을 상환합니다.
- ⑦ 마이너스방식은 대출 기간내에서 차용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되, 대출 기간이 끝나는 날에 전액을 상환하며, 이자는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마이너스방식 거래 계좌에서 상환합니다.

제22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 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약정 체결 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회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결되어 없어지는 때에는 은행은 해결되어 없어진 상황에 일치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이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3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리인하요구권)

- ① 제22조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는 회원은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회원의 신용등급 개선 등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경우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를 회원에게 10영업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 ③ 은행은 제1항의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고지합니다.

제24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

- ① 회원은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 이라 합니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는 회원이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 이자 및 은행이 제3자에게 지급한 회원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④ 은행은 회원에게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⑤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은행 등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25조 (중도상환)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상환할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접 상환하거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결제계좌 또는 은행이 회원에게 부여하는 가상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한 뒤 은행에 상환의사를 표시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당일에 상환할 경우에는 1일의 정상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6조 (대출기간 연장)

- ①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기간의 연장은 기존 약정 내용 및 회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출기간 연장 신청시 은행은 신용등급, 연체정보 등 은행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 연장이 확정된 경우 대출조건(이자율, 상환방식,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심사기준에 의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한 때에는 만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5장 대금결제

제27조 (대금결제)

- 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방법 또는 은행이 정하는 방법(즉시결제,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 등)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금결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은행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상품설명서 등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②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사용내역이 은행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환화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만약,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③ 제2항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은행에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 또는 해외이용수수료가 포함됩니다.

* 외국환을 거래할 경우 발생하는 해외송인 및 정산처리 비용 등에 대한 해외이용수수료

- ④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날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 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 - 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 / 365(윤년은 366)

- ⑤ 회원은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에 대한 은행의 채권 등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해당 권리 행사에 관한 구체적 세부내역을 나열하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사본을 첨부하여 회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⑥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기타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⑦ 회원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원금에 우선 입금공제됩니다.
- ⑧ 채무변제순서는 연체이자, 정상이자,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은행이 정한 채무변제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⑨ 회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⑩ 할부의 경우 회원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월간단위)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⑪ 제1항의 연체이자율은 은행이 정하여 매월 통보하여 드리며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은 그 초과된 이자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 ⑫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을 은행의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할 때 입금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은행은 회원이 초과입금한 금액을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결제계좌(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명의로의 계좌)로 환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산장애, 입금인과 회원명이 다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 드립니다.
- ⑬ 회원은 제12항에 따른 환급기한까지는 지연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은행은 환급에 따라 발생하는 타행이체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⑭ 제12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에 카드이용대금과 환급금액과의 상계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⑮ 회원이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은행에 취소매출전표가 접수된 경우 은행은 회원에게 취소된 결제에 대해서는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용통, 기망행위 등 고의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한 취소인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28조 (자동이체결제)

- ① 은행은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제27조의 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계좌(단, 통장분실/도난 기타의 사유로 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자동이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과 회원이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합니다.
- ③ 이용대금결제일 현재 잔액부족으로 은행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 영업일 또는 은행이 정하는 출금일에 결제하지 않은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자동납부 업무 마감 시간 이후 은행의 홈페이지 등에서 즉시결제 또는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를 통해 당일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 ⑤ 제27조 제1항의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제29조 (기한이익의 상실)

- ①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독촉·통지 등이 없더라도 회원은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2.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관계,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3.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회원은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의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결제금액을 연속하여 2회차 이상 결제하지 않는 경우
 3.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 제외)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

터 1개월간 지체한 경우

- 4.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 5.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된 경우

③ 회원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 도달일로부터 10 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은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1.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회원이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은행이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30조 (회원의 책임)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제6장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제31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란 회원이 카드이용대금 중 은행과 회원이 미리 약정한 약정(최소)결제비율 이상을 결제하면 다음 달 결제월에 잔여결제금액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는 결제방식입니다.

② 약정결제비율이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중 은행과 회원이 결제일에 결제를 원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회원은 이용금액의 10~100% 이내의 범위에서 약정조건에 따라 최소결제비율 이상으로 원하는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최소결제비율이란 회원이 결제일에 결제하여야 할 최소결제금액을 산정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최소결제비율은 10%이상으로 회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최소결제비율은 복수의 카드를 소지한 경우라도 회원단위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④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제32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신청 및 성립)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카드 발급시 또는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은행은 회원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체결시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일시상환 방법 등 주요 내용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③ 회원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체결 이후 은행은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등의 내용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이용대금명세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등 회원과 협의한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33조 (적용 대상)

① 회원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신청할 경우 은행은 신청회원의 이용실적, 신용상태, 월평균결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동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할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 허용된 카드 또는 회원이 보유한 모든 카드(가족카드 포함) 중 은행이 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외 일시불 이용금액에 한하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할부 이용금액 등은 제외합니다.

제34조 (약정기간)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기간은 최장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운영합니다.

② 은행은 약정기간이 도래한 회원에 대하여 약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약정기간 만료 예정사실(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연장가능 회원의 경우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연장 예정 사실 및 연장기간 포함, 수수료율 등 주요 내용을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연장가능 회원이 통보 후 2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지 않는 경우 회원이 선택한 기존약정 기간단위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기간이 연장됩니다.

제35조 (결제금액)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회원의 결제금액은 약정(최소)결제비율에 따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청구원금,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비대상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청구원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잔액 청구합니다.

1. 최소결제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2.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최소결제비율

3.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약정청구원금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약정결제비율

4.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수수료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 이용경과일수* / 365(윤년은 366)

* 이용경과일수 : 전월 대금 결제일 익일부터 당월 대금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② 결제일에 회원이 최소결제금액 미만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연체로 처리되며, 이 경우 회원은 최소결제금액 중 결제하지 못한 금액(이자 제외)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정한 회원이 결제일에 총 청구금액을 결제하지 않고 최소결제금액 이상을 결제한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전환되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④ 제3항의 경우 은행은 회원에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전환된 이월금액 및 선결제 가능 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또는 전화 등으로 고지합니다.
- ⑤ 약정결제비율과 관계없이 최소결제금액 이상을 결제한 경우 정상결제 처리되며, 잔여 결제대금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잔액으로 자동 이월되어 추후 입금한 경우라도 자동이체를 통해 추가 출금되지 않습니다. 추가 결제를 희망하는 경우 회원은 은행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36조 (수수료 등)

-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또는 연체료율에 대해 은행은 회원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체결 후 적용 수수료율 등은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 ② 은행은 회원의 신용변동, 은행의 조달금리 및 업무처리비용 등 금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회원에게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37조 (최소결제비율 변경)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체결 이후 회원의 연체 등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 최소결제비율을 상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최소결제비율이 최근 이용중인 약정결제비율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회원은 변경된 최소결제비율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제38조 (계약해지)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계약이 해지됩니다.
 - 1. 회원의 계약해지 요청
 - 2. 회원의 탈퇴 또는 갱신 탈락 등의 경우
 - 3. 제29조(기한이익)의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은 회원에게 이용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회원은 은행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제7장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원의 책임

제39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 ① 회원이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이하 같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 경위, 카드이용일시, 이용내역,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회원이 은행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은행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은행은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은행은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0조 (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 ⑤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은행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은행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42조에 따릅니다). 다만,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 1매당 최고 2만원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은행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용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은행의 조사결과 회원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회원은 은행이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41조 (위·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은행에 있습니다.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카드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2.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③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은행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2조 (비밀번호 관련 책임)

은행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은행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장 개인정보보호

제43조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 ① 은행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② 기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은행은 회원의 정보를 기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기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은행에 손실을 입힌 경우
 2.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 ④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44조 (변경사항의 통지)

- ①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자동이체계좌, 전자우편(E-MAIL),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계좌를 변경할 때에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은행이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은행으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9장 보칙

제45조 (위반할 경우 책임)

은행과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46조 (변경승인 등)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은행은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월 알려드립니다.
1. 은행이 할부수수료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수수료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 을, 연체이자율 등 각종 요율 또는 연회비를 인상할 경우
- 2. 은행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결제비율을 변경할 경우
- 3. 은행이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등을 변경할 경우
- 4.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은행은 제2항의 방법 이외의 전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등으로 회원에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 ④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은행은 회원에게 개별 통지 및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은행과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하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⑥ 은행의 사정에 따라 회원의 이용대금명세서 수령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은행은 회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동 수령방법 변경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도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47조 (경과 조치)

- ① 이 약관이 시행되기 이전에 약정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회원에 대하여는 은행별 내부 기준에 따라 기존 약정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제7조 제1항 및 제7조의2에 따라 카드이용 정지 및 이용한도 감액에 대한 사전 통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③ 제15조제3항의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금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에 적용합니다.
- ④ 제15조 제4항 제3호의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최초로 출시되는 부가서비스에 적용합니다.
- ⑤ 제15조 제8항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⑥ 제46조 제6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한 회원에게 적용합니다.

제48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특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여신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도록 합니다.

제49조 (관할법원)

- 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의 본점·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관할 법원,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신용카드 기업회원 규약

제1조 (기업회원 및 카드사용자)

- ① 기업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란 이 규약의 적용을 승인하고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에 VISA카드(이하 "카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은행으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 등을 말합니다.
- ② 카드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란 회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는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 ③ 회원은 사용자를 지정한 카드(이하 "임직원명의 카드"라 함)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정된 사용자만 이 해당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④ 사용자의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 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며, 사용자는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제2조 (카드의 발급 및 취급)

- ① 은행은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자를 정하지 아니한 카드(이하 "기업명의 카드"라 함) 또는 임직원명의 카드를 발급하며, 발급할 총 대수는 은행이 정합니다.
- ② 임직원명의 카드의 사용자는 카드를 발급 받은 즉시 카드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하며, 카드 표면에 기록된 명의인 이외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③ 기업명의 카드는 발급 받은 즉시 서명란에 당해 기업명이나 기관명 또는 단체명 등을 기재하고 카드 사용시에는 매출표에 사용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조 (카드의 이용한도)

- ① 카드의 이용한도는 은행에서 별도로 정하여 통지합니다.
- ② 전항의 이용한도는 은행이 관리하며, 회원 또는 기업명의 요청으로 은행의 특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연대보증인의 책임)

- ① 은행은 회원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회원의 비주주임직원은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연대보증인은 회원의 정당한 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은 카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책임을 부담할 사유가 발생된

채무 및 연 이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연대보증인의 효력은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 등의 사유로 카드가 교체된 경우도 계속됩니다.

제5조 (연대보증인의 해지권 행사)

연대보증인은 결산기를 지정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반드시 서면 통지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도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제6조 (카드의 사용제한)

사용자는 카드를 국내현금서비스, 카드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직원 명의 카드인 경우에는 개인회원에 준하여 해외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연회비)

① 은행은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 및 카드발급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카드	일반카드	오천원(카드 1매당)
	특별카드	일만원(카드 1매당)

제8조 (회보와 조사)

① 회원은 그의 재산, 부채현황, 경영, 업황 또는 용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행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 공장, 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그 재산, 영업, 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요구가 없더라도 곧 은행 앞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 (기한 이익의 상실)

①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독촉·통지 등이 없더라도 회원은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2.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관계,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3.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회원은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의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 일부결제금액이 월아정리불방의 최소결제금액을 연속하여 2회차 이상 결제하지 않는 경우
3.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 제외)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경우
4.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5.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된 경우

③ 회원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은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회원이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있거나, 은행이 분할상환금·분할상환 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10조 (준 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에 관하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신용 카드개인회원 부속약관, 관계법령 및 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11조 (유보사항)

이 규약 시행일 이전에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은행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종전의 규약에 따른 책임범위 이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율 : 연 22% ~ 27%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SSGPAY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신세계아이앤씨(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SSG PAY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서비스" 라 함은 단말기(PC, 스마트폰 등 각종 유무선 장치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 또는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SSG PAY와 그 제반 서비스를 의미 합니다.
- ② "회원" 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③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회원가입 없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통칭하여 말합니다.
- ④ "아이디"라 함은 "회원"을 식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부여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 ⑤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아이디"와 함께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 혹은 그 조합을 의미합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보기 쉽도록 "서비스"의 초기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④ "회사"가 정함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합니다.
- ⑤ 전항의 기간 안에 "회원"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4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현금 및 간편결제 서비스 등 전자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관이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둘 수 있습니다.
- ②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과 본 서비스 이용약관은 상호 보완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제 2장 회원의 가입 및 관리

제5조(회원가입 및 이용계약 체결)

-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회원가입" 및 "이용계약" 체결이 완료 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가입신청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재가입 조건이 충족되어 "회사"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4.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 ①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회사"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제12조(회원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③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④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⑤ 제1항에 의거 본인의 의지로 탈퇴한 “회원”의 경우 탈퇴일로 부터 7일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어 “회원”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재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재가입 시 새로운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7조(회원에 대한 통지)

-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이동 전화 SMS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8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③ “회원”이 본인의 계정정보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④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이용

제9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충전, 관리
 2. 신용카드 등의 간편결제 서비스
 3. “회원”이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사용처에서의 결제 증계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 ② “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 ③ “회사”는 “회원”에 대해 내부 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에 제한 및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 ④ “회사”가 제공하기로 “회원”과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가능한 수단으로 즉시 통지합니다.
- ⑤ 전항의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서비스의 이용 제한 및 중단)

-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회원”이 본 약관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있어 외부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전항 규정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7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제11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③ “회사”가 재화 등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회원”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④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2조 (“회원”의 금지의무)

- ①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명의,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 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고의로 제3자 및 타인에게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를 공유하여 "회사" 의 영리 목적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9. 자금의 융통 또는 이익 중개, 알선을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 를 이용하는 행위
 10. 영리목적으로 "서비스" 를 이용하는 행위
 11. 기타 위법, 탈법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서비스" 를 이용하는 행위
- ② "회사" 는 "회원" 이 전 항의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 에게 해당 근거를 제시하고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③ "회원" 이 본 조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 는 "회원" 이 요청하는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서비스의 중지 또는 회원자격 상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 는 필요한 경우 "회원" 의 금지의무 위반행위 사실을 관련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양도금지)

"회원" 및 "이용자" 의 서비스 받을 권리는 양도, 증여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청약철회 등)

- ① "회사" 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에 관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회원" 은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는 일정한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할 경우 "회사" 는 "이용자" 의 서비스 이용 시 해당 사실을 "이용자" 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 ② "회사" 는 회원으로부터 청약철회를 접수한 경우 수락 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고, 청약철회 사유에 해당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 ③ "회사" 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회원" 이 특정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특정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 ④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 이 부담합니다. "회사" 는 "회원" 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 의 단순 변심, 과오 등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 이 부담합니다.

제15조(이용계약의 해지 및 해제)

"회원" 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의 하자를 회사가보완, 수정할수없는경우
2. "서비스" 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제16조(환급 등)

- ① 본 약관에서 다음의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라 함은 "회사" 가 발행 당시 미리 "회원" 에게 공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환급기준금액" 이라 함은 "회원" 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을 최종적으로 취득(충전, 선물수락, 선물거부회수, 타 포인트 전환 취득 등)한 때의 잔액을 말합니다.
- ② "회원" 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의 잔액 전부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수수료로 환급금액의 5%(최소 500원)를 공제한 후 환급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 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환급기준금액" 의 60% 이상 사용하여, 그 잔액이 40% 이하인 경우(여기서의 '사용' 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금액이 차감된 경우를 말하며, 선물양도, 타 포인트 전환 등은 사용으로 보지 않음)
-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의 부분적인 환급은 불가합니다.
- ④ "회원" 이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 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2항제3호의 사용액을 산정할 때에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회사" 가 본 조에 따라 "회원" 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을 환급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은 소멸됩니다.
- ⑤ 환급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17조(선물하기)

- ① "회원" 은 본인이 소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을 다른 "회원" 및 "이용자" 에게 선물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 은 다른 "회원" 및 "이용자" 가 수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선물하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 이 선물하기를 한 후 다른 "회원" 및 "이용자" 가 14일 이내에 수락을 하지 않은 경우 선물하기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④ 선물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유권은 다른 "회원" 및 "이용자" 가 수락을 한 시점에 다른 "회원" 및 "이용자" 에게 이전됩니다.
- ⑤ 선물하기에 관하여 "서비스" 의 오작동,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이외에 "회원" 및 "이용자" 의 조작 실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원" 및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회사" 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기타

제18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회원”의 정보 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제19조(“연결회사”와 “피연결회사” 간의 관계)

- ① “상위 회사”와 “하위 회사”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회사”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회사”라고 합니다.
- ② “연결회사”는 「“피연결회사”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회원”과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회사”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③ “회원”이 :이 전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 ④ “회원”이 “회사”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 ⑤ “회원이 “회사”에 게시한 게시물은 검색결과, 상품페이지 등 “회사”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게시물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회사”의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비공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원”이 “회사”에 게시한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분쟁해결)

- ①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으로 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 ③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회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2조(재판권 및 준거법)

- ① “회사”와 “회원” 및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회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따릅니다.
- ② “회사”와 “회원” 및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한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6년 02월 02일부터 적용됩니다.

SSGPAY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신세계이앤씨(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간편결제 서비스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 ①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체휴사” 등을 통해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②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에게 자금을 이용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③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 ④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스마트폰 등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 ⑤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⑥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가입 없이 이용하는 고객 모두를 말합니다.
- ⑦ “아이디”라 함은 “회원” 및 “이용자”를 식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부여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 ⑧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아이디”와 함께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 혹은 그 조합을 의미 합니다.
- ⑨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⑩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⑪ “가맹점”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 ⑫ “금융사”라 함은 “서비스”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와 협의된 업체를 말합니다.
- ⑬ “간편결제 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결제 정보를 “서비스”에 저장하고, 해당 정보로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대금을 지불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최종 결제 처리 및 대금 정산은 “가맹점”과 “금융사” 간에 직접 이루어지고, “회사”는 그 결제 정보를 중계 역할만 수행 합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보기 쉽도록 “서비스”의 초기화면(전면 및 설정 메뉴 등)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③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 ⑤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합니다.
- ⑥ 전항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서비스
 2. 신용카드 등의 간편결제 서비스
 3.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② 회사는 필요 시 이용자에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 조 (서비스의 변경)

- 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이용시간)

-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서비스”의 페이지를 통하여 각 “이용자”의 거래내용(“오류정정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 는 제 1항에 따른 “이용자” 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 및 SMS를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 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 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 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제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 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⑤ 제 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전화번호 : 1644-1133, 이메일 : cs@ssgpay.com)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서비스에 게시 합니다.

제8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 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 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이용자” 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1호부터 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③ “이용자” 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 는 “이용자” 가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 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 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 7조 제 3항내지 제 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 가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 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 7조 제 5항 기재 담당자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 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깁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2.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제12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 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 의 인적 사항, “이용자” 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 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① "이용자" 는 회사 사이트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또는 제 7조 제 5항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 는 제 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③ "이용자" 는 "회사" 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위원회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 ① "회사" 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5조 (회사 및 이용자의 책임)

- ① "회사" 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사고로 인해 "이용자"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시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② "회사" 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 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 가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 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 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쉽게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 2항에 의한 소기업은 제외합니다)인 "이용자"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③ "회사" 는 제 1항의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16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 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 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 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 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17조(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라 함은 "회사" 가 발행 당시 미리 "회원" 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② "회원" 이라 함은 "회사" 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을 구입/충전/선물 등의 방법으로 보유하고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③ "환급기준금액" 이라 함은 "회원" 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을 최종적으로 취득(충전, 선물수락, 선물거부회수, 타 포인트 전환 취득 등)한 때의 잔액을 말합니다.

제18조(한도 등)

- ① "회사" 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해 충전, 보유, 선물, 이용 등 한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 의 정책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지정된 한도는 "회원" 이 확인 가능하도록 "서비스" 에서 고시 합니다.

제19조 (환급 등)

- ① "회원" 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의 잔액 전부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수수료로 환급금액의 5%(최소 500원)를 공제한 후 환급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 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환급기준금액" 의 60% 이상 사용하여, 그 잔액이 40% 이하인 경우(여기서의 '사용' 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금액이 차감된 경우를 말하며, 선물양도, 타 포인트 전환 등은 사용으로 보지 않음)
- ② "선불전자지급수단" 의 부분적인 환급은 불가합니다.
- ③ "회원" 이 상품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 로 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1항제3호의 사용액을 산정할 때에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회사" 가 본 조에 따라 "회원" 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을 환급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은 소멸됩니다.
- ④ 환급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20조(유효기간)

- ①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 항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 합니다.
- ③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이 5년(소멸시효) 미만인 경우, “회사”는 그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 합니다.

제3장 기타

제21조 (약관 외 준칙)

-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재판권 및 준거법)

-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금융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7년 03월 09일부터 적용됩니다.

신세계포인트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신세계포인트 회원” 이 (주)이마트, (주)신세계, (주)광주신세계, (주)신세계동대구북합환승센터(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세계포인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신세계포인트 회원”과 당사와의 제반 권리 의무 및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 ① “신세계포인트 회원” (이하 “회원”)이라 함은 당사의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신청서와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당로부터 회원 가입을 허락 받은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
- ② “신세계포인트 서비스”라 함은 회원을 위해 당사 또는 “신세계포인트 제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그 내용은 본 약관 제 3조에 정한 바와 같습니다.
- ③ “신세계포인트 카드” (이하 “카드”)라 함은 회원이 신세계포인트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당사가 승인한 카드로서 당사 또는 신세계포인트 제휴사가 발급합니다.
- ④ “신세계포인트 제휴사” (이하 “제휴사”) 및 “신세계포인트 제휴가맹점” (이하 “제휴가맹점”)이라 함은 신세계포인트 서비스에 관하여 당사와 신세계포인트 서비스 제휴 계약 또는 신세계포인트 가맹점 가입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업소를 말합니다.
- ⑤ “발생포인트”라 함은 회원이 당사, 제휴사 또는 제휴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당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혹은 당사와 해당 제휴사 또는 제휴가맹점 간에 약정된 바에 따라 부여되는 신세계포인트를 말합니다.
- ⑥ “사용가능 포인트”라 함은 발생포인트가 본 약관 제10조의 기준에 부합하여 회원이 당사, 제휴사 또는 제휴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신세계포인트를 말합니다.
- ⑦ “누적포인트”라 함은 회원이 적법하게 부여 받은 신세계포인트 중 이미 사용한 “사용가능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신세계포인트의 합계를 말합니다.
- ⑧ “신세계포인트”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신세계포인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적립 및 사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 제3장에 정한 바와 같습니다.
- ⑨ “진도적립(선불) 기능”이라 함은 물품구매나 용역의 이용 시 회원이 당사가 정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카드에 충전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일시불 거래에만 이용할 수 있는 지급 수단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선불카드의 형태를 취하는 현금대체 기능을 말합니다.
- ⑩ “사업장”이란 당사 및 당사의 계열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운영하는 백화점, 이마트 및 온라인쇼핑몰로서 당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사업장과 당사와 제휴, 가맹계약 등을 체결하여 운영되는 자영사업장을 말합니다.

제3조 (신세계포인트 서비스의 개요)

- ① 신세계포인트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본 약관에 정해진 제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a) 적립 서비스

회원은 당사, 제휴사 및 제휴가맹점에서의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신세계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b) 결제(사용) 서비스

회원은 적립된 신세계포인트를 사용하여 당사, 제휴사 및 제휴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 기타 서비스

당사는 상기 각 호의 서비스 이외에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당사는 신세계포인트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신세계포인트 홈페이지 (<http://www.shinsegapoint.com>)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은 신세계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신세계포인트 홈페이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 ID 및 비밀번호 지정 등 당사가 정하는 회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4조 (약관 개정)

- ① 본 약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본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효력 발생일" 이라고 합니다)로부터 30일 이전에 본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아래에 규정된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 a) 전자우편 통보
- b) 서면 통보
- c) 신세계포인트 홈페이지 내 게시
- d) 당사, 제휴사 또는 제휴가맹점 내 게시
- e) 일간지 광고 등의 방법

- ② 본 약관이 개정된 사실 및 개정된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하는 방법 중 본 조 제1항의 a), b) 경우에는 회원이 가장 최근에 당사에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나 주소지로 통보합니다.
- ③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이하 "개정약관") 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유효합니다.
- ④ 개정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당사의 고지가 있는 후 30일 이내에 회원 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⑤ 본 조의 고지방법 및 고지의 효력은, 본 약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약관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는 통보 또는 통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제2장 회원가입 및 탈퇴

제5조 (회원가입)

-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가 정한 가입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기입한 후 본 약관과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② 고객으로부터 회원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자체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 뒤 직접 또는 신세계포인트 제휴사를 통하여 동 기준을 만족하는 회원가입 신청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미리 발급받은 등록되지 않은 카드의 경우 신세계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후 등록하여야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 ③ 회원은 회원자격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면, 신세계포인트 홈페이지 등 당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당해 회원에 대한 통보로서 회원의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단, a)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됩니다

- a) 회원이 사망한 경우
- b) 회원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 기재 혹은 고지한 경우
- c) 신세계포인트 부정적립, 부정사용 등 카드를 부정한 방법 또는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부정적립" 이란 당사, 제휴사 또는 제휴가맹점에서 회원이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당해 회원에게 신세계포인트가 적립된 경우(당사, 당해 제휴사 또는 제휴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외) 또는 실제 구입액 혹은 이용액 이상으로 신세계포인트가 적립된 경우를 말합니다. 단, 제휴사, 제휴 가맹점 주 및 그 피고용인인 회원이 당해 제휴사 또는 제휴가맹점에서 신세계포인트를 적립 받기 위해서는 당해 회원 본인이 그 제휴사 또는 제휴가맹점에서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당해 제휴사 또는 제휴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포함)는 부정적립으로 봅니다. "부정사용" 이란 회원이 부정적립 한 신세계포인트와 타 회원의 동의 없이 타 회원의 신세계포인트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 부정적립 된 신세계포인트는 자격상실 통보와 동시에 소멸하고 이에 대하여 회원은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당이익을 취한 부분 즉, 부정적립 된 신세계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원 본인 또는 부정적립에 관여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부정사용의 사유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회원의 소명 내용을 심사하여 회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신세계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③ 회원탈퇴 또는 자격상실은 회원 탈퇴 요청일 또는 자격상실 통보일로부터 누적포인트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익일 말일에 확정됩니다. 단, 탈퇴를 요청한 회원 또는 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신세계포인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회원 탈퇴 요청일 또는 자격 상실 통보일에 회원탈퇴 또는 자격상실이 확정됩니다. 단, 사망으로 인한 회원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회원 사

망 일에 자격상실이 확정됩니다.

제3장 신세계포인트카드

제7조 (신세계포인트 카드의 이용 및 관리)

- ① 회원이 당사, 제휴사 또는 제휴가맹점에서 신세계포인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 제휴사 또는 제휴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세계포인트 홈페이지상에서는 신세계포인트 카드 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단, 신세계포인트 사용 시에는 비밀번호를 제시(또는 입력)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은 당사, 제휴사 또는 제휴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대금결제 금액에 따라 정해진 신세계포인트를 부여 받으며, 누적된 신세계포인트를 이용하여 당사, 제휴사 또는 제휴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본 약관에 따라 제공되는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는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에 등록된 카드 명의인 이외의 자가 카드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안됩니다. 또한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가 인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④ 카드는 회원 스스로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카드가 분실, 도난, 훼손되는 등의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당사는 회원으로부터 본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그 즉시 당해 카드의 사용 중지에도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합니다. 단, 당사는 당해 회원이 본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한 시점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⑥ 카드의 분실, 도난, 훼손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회원은 "신세계포인트 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⑦ 회원이 "잔돈적립(선불) 기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사가 제휴한 카드사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8조 (신세계포인트의 이용 및 관리)

- ① 신세계포인트는 회원의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금액에 비례하여 당사가 정하는 적립률에 따라, 혹은 당사와 제휴사 또는 제휴가맹점 간에 약정된 적립률에 따라 부여됩니다. 단, 상품 구매대금 또는 서비스 이용대금을 신세계포인트로 환산할 때 소수점 이하의 포인트는 절사 됩니다.
- ② 신세계포인트는 회원의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당시에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당시에 적립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날부터 30일 내에 적립이 가능합니다. 단, 적립 시 당사, 해당 제휴사 또는 제휴가맹점에 카드와 유효한 영수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③ 본 조 제1항의 경우 회원이 현금, 신용카드 등을 통해 결제를 한 후 카드와 기타의 할인카드를 제시하고 이중 포인트 누적 또는 이중 할인 등을 요청하였을 때 당사, 제휴사 또는 제휴가맹점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원은 당사, 제휴사 또는 제휴가맹점의 요구에 따라 하나의 포인트제도 또는 할인제도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④ 신세계포인트 회원이 이용한 일부 제휴가맹점에서 거래 후 적립한 포인트는 해당 제휴가맹점과 정산이 완료되면 가용포인트로 전환됩니다. 가용 포인트 전환 소요시기는 제휴가맹점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⑤ 신세계포인트의 적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9조 (신세계포인트의 정정, 취소 및 소멸)

- ① 신세계포인트의 적립에 오류가 있을 경우 회원은 오류 발생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당사는 회원의 정정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시하거나 또는 해당 제휴사나 제휴가맹점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제휴사 또는 제휴가맹점을 이용한 회원에게 영수증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고지된 포인트라 할지라도 제휴사 또는 제휴가맹점과 당사 간의 정산과정에서 미결제 금액이 발생하거나 제휴사 또는 제휴가맹점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 부여된 포인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적립된 포인트를 취소할 경우 당사는 회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당사 소정의 포인트를 보상 포인트로 해당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신세계포인트의 유효기간은 그 적립일부터 24개월이며, 신세계포인트를 적립한 후 사용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신세계포인트는 유효기간 경과 분에 한해 월 단위 선입선출방식에 의하여 자동 소멸됩니다.
- ④ 당사는 소멸 포인트 발생 시, 소멸포인트가 발생한 회원 모두에게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E-mail) 주소로 안내 전자우편(E-mail)을 발송합니다. 단, 회원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안내정보를 수신하지 못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10조 (신세계포인트의 사용)

- ① 신세계포인트는 당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또는 당사와 제휴사 혹은 제휴가맹점 간의 계약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온라인(on-line) 제휴가맹점에서 사용할 때에는 누적포인트가 1포인트 이상인 경우에, 오프라인(off-line) 제휴가맹점에서 사용할 때에는 누적포인트가 10포인트 이상일 경우 10포인트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회원은 당사, 제휴사 또는 제휴가맹점에서 카드와 비밀번호를 제시하거나 당사가 정한 소정 절차에 따라 상품의 구매 혹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가능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② 사용가능 포인트를 5,000포인트 이상 보유한 회원은 당사, 제휴사 또는 제휴가맹점에서 당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세계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 ③ 사용가능 포인트는 1포인트 당 1원으로 환산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는 본 약관 제4조의 정해진 바에 따른 약관 개정을 통하여 환산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환산금액은 그 고지된 효력 발생일부터 적용됩니다.
- ④ 회원은 신세계포인트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가 인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⑤ 회원의 고객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세계포인트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⑥ 신세계포인트의 사용 및 신세계상품권 교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11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의 포인트처리)

- ① 본 약관 제6조 제1항에 정해진 방법으로 회원탈퇴를 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탈퇴 요청일 현재까지 누적 포인트가 존재하는 경우 잔여포인트를 해소기간(회원탈퇴 요청일로부터 30일 후)까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해소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누적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② 본 약관 제6조 제2항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자격상실 통보를 받은 회원은 통보일 현재까지 누적 포인트가 존재하는 경우 잔여포인트를 해소기간(자격상실 통보일로부터 30일 후)까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해소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누적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③ 본 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 제6조 제2항 c)호에 해당하여 당사로부터 자격상실 통보를 받은 회원의 누적 포인트 중 부정 적립된 포인트는 자격상실 통보와 동시에 소멸하고, 이에 대하여 회원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신세계포인트 홈페이지

제12조 (신세계포인트 홈페이지의 목적)

당사는 회원에 대한 효율적인 신세계포인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세계포인트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본 장은 회원이 신세계포인트 홈페이지(www.shinsegapoint.com)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3조 (신세계포인트 홈페이지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① 당사는 신세계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회원에 대한 신세계포인트 서비스 관련 제반 정보의 제공
 - b)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 계약의 체결
 - c) 회원 커뮤니티 운영 서비스
 - d) 기타 당사가 정하는 업무
- ② 당사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혹은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상품,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7 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③ 당사가 제공하기로 회원과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합니다.
- ④ 전항의 경우 당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신세계포인트 홈페이지 서비스의 중단)

- ① 당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점검, 보수, 교체, 고장, 통신두절 또는 전기공급의 중단 등의 경우,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세계포인트 홈페이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세계포인트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당사는 본 조 제1항의 사유로 신세계포인트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본 약관 제4조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③ 당사는 본 조 제1항의 사유로 신세계포인트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배상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회원ID 및 비밀번호)

- ① 신세계포인트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당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ID 및 비밀번호를 홈페이지에 별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은 본인의 회원ID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주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③ 회원이 본인의 회원ID와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당사에 즉시 통보하고 당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6조 (상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 ① 회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신세계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선택
 - b)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력
 - c) 약관 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 설치비 등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 d) 결제 방법의 선택
 - e) 기타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
- ② 당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으며,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또는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③ 당사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회원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7조 (대금지급방법)

회원이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결합하여 할 수 있습니다.

- a) 본 약관상 규정한 사용가능 포인트
- b)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 c)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 d) 온라인 무통장 입금

- e)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 f) 수령 시 대금지급
- g) 당사와 계약을 맺었거나, 당사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등

제18조 (수신 확인 통지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 ① 당사는 회원으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 혹은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회원에게 수신 확인 통지를 합니다.
- ② 수신 확인 통지를 받은 회원은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 확인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 혹은 이용 신청의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당사는 배송 전에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단, 당사가 지정하는 일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구매 혹은 이용 신청의 변경 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 혹은 이용 전에 회원에게 미리 고지합니다.

제19조 (배송)

당사는 회원이 구매한 상품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20조 (환급, 반품 및 교환)

- ① 당사는 회원이 구매 혹은 이용 신청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품질 등의 사유로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당해 회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② 회원은 상품을 인도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 a) 회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또는 서비스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b) 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c)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d) 같은 성능을 지닌 상품 또는 서비스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인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e)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 ③ 회원은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신세계포인트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a) 신세계포인트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관련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b) 신세계포인트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정보의 무단 변경, 삭제 등 훼손
- c) 당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및 광고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d) 당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e)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2조 (웹사이트 연결과 당사의 책임)

신세계포인트 홈페이지와 다른 웹사이트가 각종 링크(예: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 등의 방식으로 연결된 경우, 당사는 회원과 다른 웹사이트가 독자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거래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① 당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귀속합니다.
- ② 회원은 신세계포인트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당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③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24조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 해결)

- ① 당사는 신세계포인트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 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 ② 당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 ③ 당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5장 기타

제25조 (신세계포인트 서비스의 종료)

- ① 당사는 영업부문의 폐지나 통합, 영업양도나 합병, 분할, 경영정책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 약관에 의한 신세계포인트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 또는 폐쇄할 수 있습니다.
- ② 당사는 신세계포인트 서비스를 종료 또는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중단 또는 폐쇄 시점부터 최소 3개월 이전에 본 약관 제4조 통보 방법에 의거하여 회원에게 통보하며, 당사는 적극적으로 신세계포인트 사용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 경우 신세계포인트 서비스의 종료 또는 폐쇄 기준일은 회원에게 통보된 일자로 합니다. 신세계포인트 서비스 종료 또는 폐쇄 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세계포인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10.항)에 따라 본 약관 제10조를 준용하여 현금 또는 신세계상품권으로 보상합니다.

제26조 (분쟁조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회원과 당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본 약관과 관련한 제반 분쟁 및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